

## 예금 약관 변경 안내

당행의 예금 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합니다.

- 아 래 -

### □ 주요 변경 내용

#### ○ 거치식예금 약관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3조 (이자)	<p>② 만기일 후 지급 청구할 때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만기일의 해당 통화의 보통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p> <p>만기 후 보통예금이율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신규당시 우대금리를 적용하였을 경우에도 만기 후 이율 적용 시에는 보통예금이율을 적용한다.</p> <p>③ 만기일 전에 지급 청구할 때는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일 당시 거래처와 은행이 합의한 중도해지 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뺍니다.</p>	<p>②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 이후 지급 청구할 때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만기후 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여 지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기후 1개월 미만 경과 구간 : 예금가입 당시 약정이율의 50%</li> <li>- 만기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경과 구간 : 예금가입당시 약정이율의 20%</li> <li>- 만기후 3개월 이상 경과 구간 : 해당 통화의 지급시점의 보통예금이율</li> </ul> <p>③ 만기일 전에 지급 청구할 때는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가입 당시의 약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중도해지시점까지의 경과기간에 비례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다만, 예금가입일로부터 1개월 미만 경과 후 중도해지 시, 해당 통화의 지급시점의 보통예금이율을 적용한다.</p>	<p>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를 위해 중도해지 및 만기후이자 지급방식 변경</p>

○ 정기에금 약관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6조 (이자)	<p>② 만기일 후 지급 청구할 때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만기일의 보통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p>	<p>②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 이후 지급 청구할 때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만기후 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여 지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기후 1개월 미만 경과 구간 : 예금가입 당시 약정이율의 50%</li> <li>- 만기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경과 구간 : 예금가입당시 약정이율의 20%</li> <li>- 만기후 3개월 이상 경과 구간 : 해당 통화의 지급시점의 보통예금이율</li> </ul>	<p>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를 위해 중도해지 및 만기후이자 지급방식 변경</p>
제7조 (중도해지)	<p>예금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 이 예금을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전이라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자는 예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일 당시 거래처와 은행이 합의한 중도 해지 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p>	<p>예금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 이 예금을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전이라도 해지할 수 있다. 만기일 전에 지급 청구할 때는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가입 당시의 약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중도해지시점까지의 경과기간에 비례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다만, 예금가입일로부터 1개월 미만 경과 후 중도해지 시, 해당 통화의 지급시점의 보통예금이율을 적용한다.</p>	<p>상동</p>

제8조 (기한갱신)	<p>이 예금을 만기일 이전 또는 거치기간 종료 전에 처음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예금으로 갱신하는 경우(이하 “기한갱신”이라 함)는 제 5조에 불구하고 예금일로부터 기한 갱신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1항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p> <p>기한 갱신한 예금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그 이자는 갱신전의 예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 7조에 따라 처리한다.</p>	<p>이 예금을 만기일 이전 또는 거치기간 종료 전에 처음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예금으로 갱신하는 경우(이하 “기한갱신”이라 함)는 제 7조에 불구하고 예금일로부터 기한 갱신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1항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p> <p>기한 갱신한 예금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그 이자는 갱신전의 예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 7조에 따라 처리한다.</p>	참고조항 변경
------------	--	--	---------

○ 자유정기예금 약관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6조 (이자)	<p>②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 이후 지급 청구할 때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만기일의 보통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p> <p>③ 원금의 부분 인출과 관련된 이자 계산은 아래 제7조의 내용에 의한다.</p>	<p>②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 이후 지급 청구할 때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만기후 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여 지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기후 1개월 미만 경과 구간 : 예금가입 당시 약정이율의 50%</li> <li>- 만기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경과 구간 : 예금가입당시 약정이율의 20%</li> <li>- 만기후 3개월 이상 경과 구간 : 해당 통화의 지급시점의 보통예금이율</li> </ul> <p>③ 예금의 중도해지 및 원금의 부분인출과 관련된 이자 계산은 아래 제7조의 내용에 의한다.</p>	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를 위해 중도해지 및 만기후이자 지급방식 변경

<p>제7조 (예금의 중도해지 및 원금의 부분인출)</p>	<p>① 이 예금의 원금은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예금개설일 1개월 이후부터 1백만원 단위로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 이전에 부분인출 할 수 있다.</p> <p>② 거래처가 부분 인출을 한 후의 잔여 원금이 1백만원보다 낮을 경우 은행은 예금 전체를 중도 해지할 수 있다.</p> <p>③ 부분 인출 된 원금은 예금 가입일 당시 거래처와 은행이 합의한 중도 해지 이율의 적용을 받으며 예금의 약정 이율은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 이후 지급 되는 원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p> <p>④ 만약 기 지급된 이자가 있을 경우 부분 인출된 원금에 대한 기 지급이자 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p>	<p>① 예금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 이 예금을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전이라도 해지할 수 있다. 만기일 전에 지급 청구할 때는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가입 당시의 약정 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중도해지시점까지의 경과기간에 비례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다만, 예금 가입일로부터 1개월 미만 경과 후 중도해지 시, 해당 통화의 지급시점의 보통예금이율을 적용한다.</p> <p>② 이 예금의 원금은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예금개설일 1개월 이후부터 1백만원 단위로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 이전에 부분인출할 수 있다.</p> <p>③ 거래처가 부분 인출을 한 후의 잔여 원금이 1백만원보다 적을 경우 은행은 예금 전체를 중도 해지할 수 있다.</p> <p>④ 부분 인출된 원금은 제 7조 제 ①항에 의거한 중도 해지 이율의 적용을 받으며 예금의 약정 이율은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 이후 지급되는 원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p> <p>⑤ 만약 기 지급된 이자가 있을 경우 부분 인출된 원금에 대한 기 지급이자 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p>	<p>중도해지 및 부분인출시 이율 적용 방식 명시</p>
----------------------------------	--	--	---------------------------------

	<p>⑤ 예금에 질권 설정 등 지급제한이 되어 있을 경우 부분 인출이 되지 않는다. 만약 거래처가 부분 인출을 원할 경우 질권 등 제한사항을 해소한 후 부분 인출을 하도록 한다.</p> <p>⑥ 예치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예금원금에 대하여는 세금우대혜택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p>	<p>⑥ 예금에 질권 설정 등 지급제한이 되어 있을 경우 부분 인출이 되지 않는다. 만약 거래처가 부분 인출을 원할 경우 질권 등 제한사항을 해소한 후 부분 인출을 하도록 한다.</p> <p>⑦ 예치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예금원금에 대하여는 세금우대혜택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p>	
--	---	---	--

○ 외화정기예금 약관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7조 (이자)	<p>②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종료일 후 지급 청구할 때는,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종료일부터 지급일 전날 까지 기간에 대해 만기일의 해당 통화의 보통예금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p>	<p>②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 이후 지급 청구 할 때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만기후 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여 지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기후 1개월 미만 경과 구간 : 예금가입 당시 약정이율의 50%</li> <li>- 만기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경과 구간 : 예금가입당시 약정이율의 20%</li> <li>- 만기후 3개월 이상 경과 구간 : 해당 통화의 지급시점의 보통예금이율 적용. 단, 보통 예금이율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통화의 지급시점의 외화종합예금이율을 적용</li> </ul>	<p>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를 위해 중도해지 및 만기후이자 지급방식 변경</p>

제10조 (중도해지)	예금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 이 예금을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 전이라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자는 예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일 당시 거래처와 은행이 합의한 중도 해지 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예금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 이 예금을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 전이라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자는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가입 당시의 약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중도해지시점까지의 경과기간에 비례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다만, 예금가입일로부터 1개월 미만 경과 후 중도해지 시, 해당 통화의 지급시점의 보통예금이율을 적용하며 보통예금이율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통화의 지급시점의 외화종합예금이율을 적용한다.	상동
제11조 (기한변경)	이 예금을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 전에 처음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예금으로 변경하는 경우(이하 “기한변경”이라 함)는 제 8조에 불구하고 예금일로부터 기한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5조 제1항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고, 기한 변경일 이후 이율은 변경일 당시 거래처와 은행이 합의한 이율로 한다. 다만, 기한 변경한 예금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그 이자는 변경전의 예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 8조에 따라 처리한다.	이 예금을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 전에 처음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예금으로 변경하는 경우(이하 “기한변경”이라 함)는 제 10조에 불구하고 예금일로부터 기한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7조 제1항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고, 기한 변경일 이후 이율은 변경일 당시 거래처와 은행이 합의한 이율로 한다. 다만, 기한 변경한 예금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그 이자는 변경전의 예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 10조에 따라 처리한다.	참고조항 변경

□ 시행일 : 2011. 12. 30.

※ 본 게시 후 1개월 이내에 거래처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HSBC은행